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유치원 회계 처리 부적정(현금 인출 지급)
기 관 명 예담유치원
내 용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따라 유치원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집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 의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하며, 제33조(지출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하며,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및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규정된 금전출납부와 세출내역부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담유치원에서 2018~2020회계연도까지의 감사대상 기간에 있어, 아래 [표1]와 같이 자금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회계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수령인 서명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2018~2020학년도 현금거래 내역

[단위:원]

번호	거래일시	적요	출금	구분	비고
1	2018-09-12 11:27	가지치기인건비	100,000	현금	
2	2018-09-12 11:27	인지대외잡비	66,530	현금	
3	2019-01-31 10:38	[기재내역없음]	50,000	현금	
4	2019-02-27 15:53	오티다과	21,880	현금	
5	2019-08-06 13:59	6/28식재료	178,000	현금	
6	2019-08-07 14:52	운영자상환금	3,000,000	현금	
7	2019-08-07 14:56	등기인지대	7,200	현금	
8	2019-11-05 10:38	운영자차입반환	1,500,000	현금	
9	2020-01-21 11:02	세뱃돈	42,000	현금	

조치할 사항 예담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회계 운영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통학차량 및 체험학습차량 관련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예담유치원
내 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각 목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를용 금지 등)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는 자는 자가 또는 임대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지입차량으로는 운행할 수 없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의거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예담유치원은 유치원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차량기사 이재갑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주)○○관광」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차량기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유치원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 「○○○(99%), ○○○(1%)」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별도의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차대금을 유치원 소속 직원 및 개인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2018~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대금 지급 내역

No	거래일시	적요	의뢰인/수취인	출금	비고
1	2018-03-30 10:27	키즈올림픽차량	○○○	50,000	직원
2	2018-04-27 20:54	호수공원차량비	○○○	50,000	직원
3	2018-05-04 19:41	뮤지컬차량	○○○	100,000	직원
4	2018-06-29 19:14	○○마트견학차량	○○○	50,000	직원
5	2018-07-13 20:24	소방서 견학차량	○○○	50,000	직원
6	2018-09-06 17:43	뮤지컬 차량	○○○	50,000	직원
7	2018-10-12 10:09	가을소풍차량	○○○	180,000	
8	2018-11-06 10:15	가을소풍버스	○○○	120,000	
9	2019-03-29 09:49	키즈올림픽차량	○○○	50,000	직원
10	2019-05-03 18:29	뮤지컬 차량	○○○	50,000	직원
11	2019-05-10 17:57	고양종합운동장 차량	○○○	50,000	직원
12	2019-06-04 16:14	현충공원차량	○○○	50,000	직원
13	2019-10-25 14:49	가을소풍 차량	○○○	160,000	
14	2019-10-30 18:51	경찰서 견학차량	○○○	50,000	직원
15	2019-11-04 18:17	캠프차량	○○○	50,000	직원
16	2020-01-20 14:59	킨텍스 차량	○○○	50,000	직원
합계				1,160,000	

조치할 사항 예담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급식 관련 서류 작성 부적정
기 관 명 예담유치원
내 용

「유아교육법」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2항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제2호에 의거,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를 비치 및 보관해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2018~2020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급식일지에는 급식횟수, 급식단가, 급식인원, 오늘의 식단, 검식확인, 개인위생, 조리위생, 냉장·냉동고 온도 확인·기록하여 2년간(2020년도부터 급식일지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식재료 구매·검수서는 급식비 지원 정산보고에 따른 근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구매내역’항목에는 식재료명, 원산지, 규격설명, 수량 기재, 물건구입 후 ‘식재료 검수’항목에는 입고수량,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상태 확인·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담유치원은 유아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급식 식재료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급식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았고, 식재료 구매·검수서와 급식 서류간[2020.11.10. 급식일지 생선까스(3.2kg) vs 2020.11.9. 식재료 검수서 생선까스(4.24kg)] 수량이 불일치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식재료 구매·검수서에 원산지, 수량, 품질상태를 기재하지 않는 등 급식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담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급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교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기 관 명 예담유치원
내 용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경기도교육청 「2018~2020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에 따라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 보조인력 등 급식관계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고, 급식시작 전 또는 급식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담유치원에서는 2018.03.01.부터 2021.3.31.까지 근무한 교직원 ○○○의 ‘건강진단’을 급식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았고 2019.5.28.자에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서 외 2018년도와 2020년도에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여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위생과 안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예담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은

- 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급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② 관련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요구)합니다.